

體育系 入試의 문제와 개선 방향

姜 相 兆
(韓國體大 競技指導科)

1. 序

體育學 系列의 입시 전형은 知的 能力이 우수한 학생 못지 않게 현재와 같이 體力과 運動技能(skill)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데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형 방법은 體育學 教科의 性格 측면에서 그리고 體育教育이 국가·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體育의 教育的 價値를 확립하는 데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體育學 系列 입시 전형의 또다른 특징은 대입 학력고사, 고교 내신 성적, 실기고사의 전형 비율과 실기고사 적용 등에서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大學 入學試驗制度 變遷 과정에서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대학의 學生 選拔權의 제약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體育系列에서는 학생 선발에 관한 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體育系 學科(體育學科, 體育教育學科, 社會體育學科 등)의 설치 목적이 大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없고, 또 달라서도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대학 입시에서의 實技考查는 體育教育課程을 이수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는 內容(要因)도 최소한 그 골격은 대학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體育學系 입시 전형 방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들은 이러한 前提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체육계 대학 입학 시험에 實技考查 전형을 포함시킨 배경에는 大學教育課程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데 實技能力(體力·運動技術)이 필수적이라는 系列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학생 선발권을 해당 계열에 부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系列에 부여된 學生選拔의 자율권이 학생을 선발하는 입시 제도로서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信賴度·妥當度 및 客觀性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그동안의 체육계 대학 입시에서 運動能力은 우수한 반면 상대적으로 知的 측면에서 열등한 사람들이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졸업 후 學校現場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體力과 運動能力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아직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비판은 實技에 치중하고 있는 體育系 入試制度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또한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엘리트 육성을 위해 지난 '7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體育特技者 대입 특별 전형 제도는 그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됨으로써 현재

制度改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教育部는 사회 문제로 부각된 체육 특기자 특별 전형 문제와 관련하여 특기자 자격 기준 강화와 學力基準 적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體育特技者 制度를 포함한 體育系 대학 입시 전형의 합리적 방안 구상과 관련하여 현행 체육계 입시 전형의 실태와 문제점을 크게 전형 비율·반영 비율, 전형 내용과 전형 검사의 良好度 측면에서 概觀하고, 이를 기초로 體育系 입시 전형 改善方案을 제안하려고 한다.

2. 體育系 大入銓衡의 現況과 問題

1) 體育系 入試의 銓衡比率과 反映比率

體育系列 入試銓衡에서 학력고사, 내신 성적, 실기고사의 전형 비율은 대학마다 다양하다. 學力考查의 전형 비율 범위는 대학별로 20~50%로 상당히 크며, 實技考查 전형 비율 역시 20~50%로 차이가 크다. 반면, 丙申成績 전형 비율의 범위는 대학별로 비슷하게 30~4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대학에 入學銓衡의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형 비율이 대학마다 어떠한 근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전형 비율은 입시 전형별로 滿點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면 銓衡比率 40, 30, 30%란 전형별로 만점을 340, 255, 255 점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일한 전형 비율이 적용되는 考查라 할지라도 응시자가 실제 취득할 수 있는 점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전체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 범위가 큰 考查일수록 실제 入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응시자들이 취득한 考查別 점수 범위가 전형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제시된 전형 비율은 별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응시자들이 실제 考查에서 취득한 點數範圍를 기초로 한 '考查別 反映比重'이 실제적인 전형 비율로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표 1〉은 A大學의 최근 入試資料를 분석한 결과이다. 물론 이 자료가 전체 64 개 體育學系列 大學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標集數의 절대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客觀化시킬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들은 단지 問題를 제기하고 傾向性을 이해하는 提報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大學의 경우 학력고사, 내신 성적, 실기고사의 反映比重은 각각 24.3%, 11.9%, 63.7%로서 實技考查의 실제 반영 비중은 銓衡要綱에 제시된 전형 비율(30 : 30 : 40)보다 무려 23.7%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은 銓衡比率보다 18% 이상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기고사의 실제 반영 비율이 규정된 전형 비율보다 학력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또한 응시자와 합격자가 실제 획득한 考查別 點數範圍에 의하면, 학력고사와 내신 성적에서는 두 점수 범위 간의 차이(A-B)가 작은 반면 實技考查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實技考查 點數가 낮은 응시자는 반드시 불합격되었어도 學力考查 점수가 낮

〈표 1〉 체육계(A대학) 입시 전형 결과

전형 구분	전형 비율(%)	만 점	응시자		합격자	㉠-㉡
			㉠ 취득 점수 범위(H-L)	반영 비중(%)	㉡ 취득 점수 범위(H-L)	
학력고사	30	340	114	24.3	109	5
내신 성적	30	340	55.9	11.9	42.3	13.6
실기고사	40	453	298.5	63.7	147	151.5
전체	100	1133		99.9		

* 자료: 강상조, "체육계 실기고사의 합리적 방법과 문제", 「教育評價研究」, 3권 2호, 1989, p.106.

은 응시자는 반드시 불합격되지는 않았음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學力差는 入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데 비해 實技의 差異는 상당한 혹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논리는 학력고사, 내신 성적, 실기고사의 銓衡比率이 폭 넓은 일반화 가능성을 가진 준거인 데 비해 취득 점수의 비율은 특정 응시자들의 특성이 반영된 經驗的 準據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데 다소 무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앞의 <표 1>에 예시된 資料는 해당 대학의 최근 3년 간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결과라는 점, 실제적으로 전국 대학의 體育系列學科 지원 특성(지원율, 실기·학력고사 수준 등)이 大學別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 내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분석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향으로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2) 大入銓衡 實技考査의 良好度

大學 入學銓衡은 大學教育에 필요한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현행 實技考査가 대학 體育科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 목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검사의 信賴度와 妥當度는 과연 받아 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자료에 학력고사 성적, 내신 성적, 실기고사와 大學敎科成績 간에 대한 豫言妥當度 및 입시 실기고사 증목과 大學 實技敎科成績 간의 상관 정도는 統計的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2> 입시 전형 고사의 예언 타당도 (n=40)

전형 내용	대학 성적		총 점
	이론교과 성적	실기교과 성적	
학력고사	.557***	.139	.383**
내신 성적	.220	.070	.160
실기고사			
체력·운동 능력	.272	.047	.176
운동 기능(특기)	.234	.046	.103
실기고사 전체	.280*	.003	.155

*자료: 강상조, "체육계 실기고사의 합리적 방법과 문제", 『教育評價研究』, 3권 2호, 1989, p.108.

<표 2>는 입시 전형 학력고사, 내신 성적, 실기고사 성적이 大學 體育敎科課程을 이수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豫言妥當度를 조사·분석한 자료이다. 여기서 대학 체육교육과정의 이수 성적은 A대학 1학년말 理論 및 實技 敎科成績이다.

A대학의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내신 성적과 실기고사 총점보다는 학력고사가 大學 成績을 豫言하는 妥當度가 높다. 구체적으로 학력고사 성적의 大學 理論 敎科 성적에 대한 豫言妥當度는 .557(P<.001)로서 내신 성적과 실기고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係數로 나타났다. 또한 내신 성적의 大學 理論 敎科 성적에 대한 豫言妥當度 係數는 .220으로서 다른 입학 전형 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계수를 보이고 있다.

실기고사 가운데 運動能力 檢査의 대학 교과과정 이수 성적에 대한 豫言妥當度는 .103~.176으로서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계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入學銓衡 實技考査의 대학 실기 교과 성적에 대한 豫言力은 .003~.0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대학 실기 교과 성적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入學銓衡에서의 실기고사는 대학 실기 교과 성적을 타당하게 예언하는 검사로 보기 어렵다.

3) 實技考査의 內容 構成

현재 體育系列 대학 입학 실기고사는 대학별로 體力·運動能力檢査, 運動技能檢査(특기 검사), 特技種目 書類審査 등 전형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系列學科의 특성과 學生의 적성·소질을 입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實技檢査의 내용 구성은 體育系列學科(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 사회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대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은 각 대학에서 결정한 실기고사 내용이 體育系學科의 教育課程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目標 中心이라기보다는 大學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入學 實技檢査의 내용은 이러한 필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필요한 內容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내용은 大學間에 차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大學別로 실시되고 있는 體力檢査(運動能力檢査) 數는 대학마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운동 능력 검사 수는 최하 2개 검사부터 최고 9개 검사까지로 다양하며 體育系列 學科 間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또한 각 大學이 실시하고 있는 體力檢査를 기초 체력 요인과 운동 수행 능력 요인으로 구분한 결과에서도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體力檢査 과목은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體力·運動能力檢査는 계열 학과의 특성과 무관하게 대학의 제량에 의해 종목이 선정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정된 體力檢査 과목들이 체육 계열 학과의 敎育課程 이수에 필수적인 要因인지, 또는 선정된 검사가 해당 요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분석이 전제되기보다는 전통적인 現場檢査로서 다수 인원을 측정하는 데 용이한 검사들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수행된 體育系列에 관한 연구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體力·運動能力檢査들의 信賴度·妥當度·客觀度를 실증적으로 분석·보고한 사례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

한편, 체육 계열 입시 전형 實技考査는 대학에 따라 수험생이 종목을 선택하는 運動技能檢査(이른바 特技檢査)를 포함하고 있는데, 전국의 과반수 정도의 대학이 體力檢査와 技能檢査 결과를 합산하여 실기고사 점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실기고사 총점 가운데 體力檢査와 運動技能檢査가 차지하는 전형 비율 또는 이들 검사의 점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입시 전형 運動技能檢査의 특징은 수험생이 實演한 競技力을 評價者(심사 교수)가 주관적으로 評定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자 수도 2~10 명으로서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 물론 評價者의 評定點數가 어떠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運動技能 점수로 환산되는가를 확인할 방법

이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몇 가지 사항은 技能檢査의 客觀度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또한 運動技能檢査는 측정 대상이 課題遂行結果(예: 기록)가 아닌 課題遂行過程(예: 경기력, 동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적지 않은 評價者들은 수험생이 공을 잡고 드리블을 하면서 슛하는 動作을 보면 그 수험생의 농구 기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비전문가의 눈에도 구체적인 차이까지 변별해 내기는 어려워도 기능 수준을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課題遂行過程에서 보여진 競技力을 客觀性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評價者에 따라 評價觀點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4) 競技入賞 實績反映과 體育特技者 大入 特別銜銜制度

體育系列 實技考査 전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하나의 특징은 8개 大學에서 어느 한 종목의 技能 水準이 높은 수험생, 즉 경기 입상 실적이 있는 수험생은 서류 전형에 의해서 높은 실기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이는 大學의 實技敎科課程을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基本技能을 평가하고자 하는 實技考査 실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경기 입상 실적을 實技銜銜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高校 敎科課程 운영으로는 도달 불가능한 수준을 대학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국 규모 대회에서의 入賞 實績은 체육 특기자의 경기력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때, 현재 정규 고등학교 敎育과정에서 이수하면서 상응하는 競技成績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 실적의 반영은 고교 敎育課程의 정상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지난 '7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體育特技者 大入 特別銜銜制度는 '90년 입시를 기준으로 2,000여 명이 特技者로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대학 입시 제도의 특징적인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 있다. 또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기자들이 體育學 系列 學科에 입학함으로써 이 제

도는 체육학 계열! 입시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體育人口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엘리트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體育特技者 특별 전형 제도가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보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것은 이 제도가 시행되어 오는 동안 긍정적 기여 못지 않게 부작용 또한 빈번하게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입학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당국의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體育特技者 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격 기준인 전국 4強 入賞實績을 얻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한다든가, 指導者 간의 승패에 대한 담합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선수 개인의 기량에 관계없이 팀이 4강에 들면 후보 선수까지 特技者로 선발되는 허점을 악용한 일부 학부모들이 기부금·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指導者를 매수하여 자녀를 후보 선수로 등록시키는 등의 관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87년부터 추가로 지정된 골프·볼링·승마·아이스하키 등의 종목은 장비 구입 및 교습비 등에 지출되는 많은 돈을 선수 개개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여러 비교육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19년 동안 운영되어 온 체육 특기자 제도는 최근에는 제도 개선·보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오늘날 時代的·社會的 要求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나 선수 자신들의 관심 또한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 선수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 改善方案

현재 적용되고 있는 學力考查, 內申成績, 實技考查의 전형 비율이 점수 비율이 아닌 만점 비율에 입각하여 설정되는 한 實技考查의 실제 反映比重은 '설정된 銓衡比率'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학력고사 성적보다는 주로 실기고사 성적에 의해 入學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大學 修學能力이 부족한 저학력 응시자가 입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만큼 實技評價에서 評價者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고사별 銓衡比率는 현재와 같이 滿點比率에 입각하여 설정하기보다는 전체 응시자가 실제 취득한 點數範圍 比率를 근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만점 비율에 입각한 전형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學力考查에 絕對基準를 적용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大學에서는 運動技能 評價方法으로 課題 遂行過程의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 수행 결과를 측정하는 검사는 수행 결과 얻은 記錄이 客觀性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 확보될 수 있는 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검사와 같이 과제 수행 과정을 측정하는 檢查는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競技力(演技, 動作 등)을 증거로서 확보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評價者에 따라 評價觀點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選拔檢查의 客觀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運動技能檢查의 경우, 과제 수행 과정이 대상이 되는 檢查를 가능한 한 과제 수행 결과가 측정 대상이 되는 검사로 대체하거나 評價者 數를 증원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때 평가자는 지역간 공동 관리 방식에 의해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가능한 5인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제 수행 과정을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技術에 대한 課題分析을 토대로 技術評價를 위한 구체적인 動作의 準據를 설정하고 검사의 良好度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행 運動技能檢查의 評價方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검사 종목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법·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지 몇 개 대학에서만 運動技能檢查의 구체적인 評價內容을 입시 요강에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운동 기능 검사가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종목 범위, 종목별 평가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公開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實技評價에 적용되는 檢查들은 추구하고자 하는

教育目標 달성과 관련된 내용과 항목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評價方法 및 評價者 訓練 그리고 基準點數設定 등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더불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競技入賞實績을 서류 심사하는 것은 大學 實技 敎科課程을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基本技能을 평가하고자 하는 實技考査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더구나 경기 입상 실적은 미래의 운동 기능을 보장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入賞實績은 정상적인 교과 교과 운영으로는 도달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입상 성적 자체가 가지는 모순 또한 적지 않다. 特技者制度는 단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競技力을 가진 선수들에게만 特別銓衡의 資格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의 강화책이 필요할 것이다. 전국 규모 대회 개최 회수 및 출전 회수를 제한한다든지 출전 기록·성적을 기준으로 한 종목별 선수 랭킹 기준을 작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學生選手들에게 정상적인 學校敎育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지 않고, 運動能力과 素質을 겸비한 많은 학생들에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體育人口의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육성을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발전적으로 體育特技者制度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實技考査에 의한 選拔은 시험 당시 實技能力이 높은 학생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즉, 현재의 선발 방법은 대학 교과과정에 포함된 실기 내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현재의 實技能力에 의존하고 있을 뿐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評價없이 선발되고 있기 때문에, 선발된 학생에 따라서는 앞으로 계속 혹은 현재보다 향상된 實技能力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의 확보

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體育學 系列 입학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實技考査는 현재의 運動能力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까지를 동시에 評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大學 實技 敎育課程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運動適性檢査를 개발·활용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姜相兆, “體育系 實技考査의 合理的 方法과 問題”, 「教育評價研究」, 3권 2호, 1989, pp.103~121.
- 金升坤, “體育學科 入試實技考査에 관한 調查研究”, 「제주대학논문집」, 13집(자연과학편), 1982, pp. 219~229.
- 金昌範外, “體育學科 入學을 위한 實技銓衡에 관한 調查研究”,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1985.
- 敎育改革審議會, “大學入試制度의 改善”, 「政策研究」, II·2, 1986.
- 朴淳哲, “體育學科 入學考査에 관한 調查研究”, 「한국체육학회지」, 12호, 1976, pp.43~57.
- 李正雨, “體育科 入試種目的 基準에 관한 考察-實技 6種目を 對象으로”, 「경남대논문집」, 9집(자연과학편), 1982, pp.325~339.
- 元浩淵, “體育系列學科 入學 實技考査種目과 配點比率에 관한 研究”, 「關東大學論文集」, 1986, pp. 1~25.
- 鄭石珍, “體育敎育學科 入學考査의 實技考査에 대한 分析 研究”, 「전북대학교논문집」, 24집(자연과학편), 1982, pp.217~223.
- 鄭哲正, “體育科 入學實技考査 改善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논문집」, 31집, 1982, pp.327~340.
- 崔東妮·金容英, “體育學科 入學考査에 관한 연구-木浦大學 體育學科 實技考査를 中心으로”, 「목포대학교논문집」, 4집, 1982, pp.675~684.